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주 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시민대표 기관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정 전반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서울특별시 최고의결기관이며,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한 대표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시민대표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최고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구현을 보좌하고 지원해야할 임무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은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 보좌를 위한 사무기구의 장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음. 그럼에도 사무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일련의 제도 도입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사무처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305회 임시회 제1, 2차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사무처장은 현안 질의에 나선 위원에게 수 차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반복하고 권한이 없음에도 질의한 위원에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이를 제지하고 발언의 중지를 요구하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불응해 무단으로 발언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정회 중에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을 향해 부적절하고 과격한 언동으로 운영위원회와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음.

지방의회의 회의는 시정 주요 사항에 대해 시민 대표인 지방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임.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 제51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관련 규정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등에서 회의의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난 2월 7일 의결해 공포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서 허가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음.

이렇듯 누구보다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회의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야 할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으로서의 역할을 잊은 채 공개된 회의에서 회의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위원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태도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됨.

또한, 개방형 사무처장 공고문에는 사무처장의 주요 업무로 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사무처장은 임용 이후 사무처 구성원과 의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조직내 갈등 원인을 제공해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아울러,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련의 행위 과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발전해 왔으며,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통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상 불합리한 운영제도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사권 운영의 자율성 등을 확보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제도를 유지발전 시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추진하고 있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회 사무를 관장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야 할 사무처장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태도로 1991년 이후 지난 31년 동안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회 위상을 유지 발전 시켜온 서울특별시의회 위상을 저해하고,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폄하하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무처장(김상인)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